#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2101

제안년월일 : 2021년 3월 3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이 신규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될 소지가 있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부과대상인 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표의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이 신규 사업시행자뿐 만 아니라 현 사업시 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제3조제1항제1호(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단서 중 "단지 매각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일괄"을 "사업시행자에"로 한다.

### 【 별표 】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	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m²)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i>m</i> ²)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sim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sim 5,556$	23,314
		5,55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sup>※</sup>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sup>※</sup>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sup>※</sup>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1. 신설

가정-	<u>9</u>	비가정용	
연면적 (m²)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i>m²</i>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327	151 이하	327
86 ~ 150	916	152 ~ 431	916
151 ~ 300	1,473	432 ~ 915	1,473
301 ~ 400	2,618	916 ~ 1,575	2,618
401 ~ 500	4,418	1,576 ~ 2,593	4,418
501 이상	6,774	$2,594 \sim 5,556$	6,774
		5,557 ~ 10,986	12,369
		$10,987 \sim 16,125$	16,427
		16,126 ~ 34,376	28,011
		34,377 ~ 61,842	45,059
		61,843 ~ 99,763	61,028
		$99,764 \sim 212,640$	86,682
		212,641 ~ 382,752	116,918
		382,753 이상	140,994

##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수	정 인	<u>}</u>
[별표]			(별표)				(별표)			
'- '	그 사저기주(2	세4조제1항 관련)	워인자부두	금 산정	기준(제4조제	] 핫 관련)	원인자부터	라금 산정	기준(제4조제	1항 관련)
	항제1호의 경우	(대규모 주택단지 및	<ul><li>제3조제</li><li>산업시</li></ul>	-	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1항제1호의	의 경우(대규모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가정		비가정		가정	용	비가정	98
내경 15mm 내경 20mm	<u>864,000원</u> 2,180,000원	<u>1,312,000원</u> <u>2,247,000원</u>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내경 25mm <u>내경 30mm</u> 내경 40mm	<u>3,688,000원</u> <u>5,120,000원</u> 6,749,000원	<u>4,388,000원</u> <u>8,185,000원</u> 10,456,000원	<u>85 이라</u> <u>86 ~ 150</u> 151 ~ 300	<u>864</u> <u>2,180</u> 3,688	<u>151 이라</u> <u>152 ~ 431</u> 432 ~ 915	1,312 2,247 4,388	85 이라 86 ~ 150 151 ~ 300	864 2,180 3,688	<u>151</u> 0尚 <u>152 ~ 431</u> 432 ~ 915	2,247
내경 50mm 내경 65mm	<u>14,611,000원</u> =	<u>23,314,000원</u> <u>38,142,000원</u>	301 ~ 400 401 ~ 500 501 이상	5,120 6,749 14,611	$916 \sim 1,575$ $1,576 \sim 2,593$ $2,594 \sim 5,556$	8,185 10,456 23,314	<u>301 ~ 400</u> <u>401 ~ 500</u> 501 이상	5,120 6,749 14,611	$916 \sim 1,575$ $1,576 \sim 2,596$ $2,594 \sim 5,556$	8,185 10,456
<u>내경 80mm</u> <u>내경 100mm</u> 내경 125mm	- -	<u>48,698,000원</u> <u>84,597,000원</u> 167,814,000원	001 18	11,011	$5,557 \sim 10,986$ $10,987 \sim 16,125$ $16,126 \sim 34,376$	38,142 48,698	601 16	11,011	$5,557 \sim 10,986$ $10,987 \sim 16,125$ $16,126 \sim 34,376$	38,142 48,698
내경 150mm 내경 200mm	-	<u>219,750,000원</u> <u>462,767,000원</u>			34,377 ~ 61,842 61,843 ~ 99,763	84,597 167,814 219,750			34,377 ~ 61,842 61,843 ~ 99,763	167,814 219,750
<u>내경 250mm</u> <u>내경 300mm</u> 내경 350mm	= = =	<u>1,044,423,000원</u> <u>1,350,830,000원</u> 1,729,460,000원			99,764 ~ 212,640 212,641 ~ 382,752 382,753 • ks	462,767 1,044,423 1,350,830			99,764 ~ 212,640 212,641 ~ 382,752 382,753 이상	1,044,423
내경 400mm	= = =	<u>1,729,400,000년</u> <u>2,340,437,000원</u>								
다만, 주	수 도계량기가	<u>청구경을 기준 한다.</u> 설치되는 <b>단독주</b> <b>'주택) 및</b> 공동주	다중	, 다가구주	설치되는 단독 <sup>2</sup> <sup>-</sup> 택) 및 공동주 <sup>1</sup> 정하여 합산하5	책은 세대	다중	, 다가구주	설치되는 단독 -택) 및 공동주 - - - - - - - - - - - - - - - - - - -	택은 세대
	대별 인입급수	관은 15mm 구경을	면적		초과할 경우에도		면적		초과할 경우에도	
				<u>-</u> 물사용량 립의 후 결	<u>을 종합 고려하</u> 정하다	여 수요가		<u>은 물사용량</u> 협의 후 결	<u>을 종합 고려하</u> 정하다	여 수요가
			* <u>부</u> 과시	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1		* <u>부</u> 과/	기는 지구	- - - 계획 승인 후	
					<b> 행자에 일괄</b> 에 따라 차액을 <sup>&gt;</sup>			부과하되  을 정산한1	<u>, 추후 계획변</u> 가 <u>.</u>	경에 따라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u>개조</u>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

> 금 차액 장수. 다만, 산증

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

택(「건축법」제2조제2항

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

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

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장수 면제

<u>신설</u>

327,000원

<u>916,000원</u>

1,473,000원

2.618.000원

4,418,000원

6,774,000원

12,369,000원

16.427.000원

28,011,000원

45,059,000원

61,028,000원

86,682,000원

116,918,000원

140,994,000원

177,487,000원

193,161,000원

구 분

내경 15㎜

<u>내경 20mm</u>

내경 25mm

내경 30mm

내경 40mm

내경 50mm

내경 65mm

내경 80㎜

<u>내경 100mm</u>

<u> 내경 125mm</u>

내경 150mm

내경 <u>200</u>mm

<u>내경 250mm</u>

내경 300mm

내경 350mm

<u>내경 400mm</u>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1. 신설				1. 신설	
<u>가정</u>		<u>비가정용</u>		<u>가</u> 정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 부든 (천
85 °   150 °	864 2,180 3,688 5,120 6,749 14,611	151 obj. 152 ~ 431 432 ~ 915 916 ~ 1.575 1.576 ~ 2.533 2.594 ~ 5.556 5.557 ~ 10.986 10.987 ~ 16.125 16.126 ~ 34.376 34.377 ~ 61.842 61.843 ~ 99.763 99.764 ~ 212.640 212.641 ~ 382.753 382.753 obj.	1,312 2,247 4,388 8,185 10,456 23,314 38,142 48,698 84,597 167,814 219,750 462,767 1,044,423 1,350,830	85 °   150 °	(a) (b) (b) (b) (b) (c) (c) (c) (c) (c) (c) (c) (c) (c) (c

-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 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 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기원하다 적용한다.
-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 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u>l. 신설</u>			
<u>가정</u>	<u> 가정용</u> <u> 비가정용</u>		<u>}</u>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자 부담금 (천원)
85 °  s - 86 ~ 150 151 ~ 300 301 ~ 400 401 ~ 500 501 °  d-	864 2.180 3.688 5.120 6.749 14.611	151 o   5   152 \( \times \) 431 \( 432 \( \times \) 916 \( \times \) 1,576 \( \times \) 2,594 \( \times \) 5,556 \( \times \) 2,594 \( \times \) 5,556 \( \times \) 2,594 \( \times \) 5,556 \( \times \) 10,986 \( \times \) 10,987 \( \times \) 16,126 \( \times \) 34,376 \( \times \) 16,126 \( \times \) 34,377 \( \times \) 16,126 \( \times \) 34,377 \( \times \) 16,126 \( \times \) 34,377 \( \times \) 16,212,640 \( \times \) 382,753 \( \times \) 12,2641 \( \times \) 382,753 \( \times \) 1382,753 \( \t	1.312 2.247 4.338 8.185 10.456 23.314 38.142 48.638 84.597 167.814 219.750 462.767 1.044.423 1.350.830

- <u>2. 개조</u>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 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u>후 결정한다.</u>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경별 업종별"을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フト>	정용	비가정용	
연면적 (m²)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 <i>m²</i> )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864	151 이하	1,312
86 ~ 150	2,180	152 ~ 431	2,247
151 ~ 300	3,688	432 ~ 915	4,388
301 ~ 400	5,120	916 ~ 1,575	8,185
401 ~ 500	6,749	1,576 ~ 2,593	10,456
501 이상	14,611	$2,594 \sim 5,556$	23,314
		5,557 ~ 10,986	38,142
		10,987 ~ 16,125	48,698
		16,126 ~ 34,376	84,597
		34,377 ~ 61,842	167,814
		61,843 ~ 99,763	219,750
		99,764 ~ 212,640	462,767
		212,641 ~ 382,752	1,044,423
		382,753 이상	1,350,830

<sup>※</sup>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 부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1. 신설

가정-	<u>9</u>	비가정용	
연면적 (m²)	원인자부담금 (천원)	연면적 (m²)	원인자부담금 (천원)
85 이하	327	151 이하	327
86 ~ 150	916	152 ~ 431	916
151 ~ 300	1,473	432 ~ 915	1,473
301 ~ 400	2,618	916 ~ 1,575	2,618
401 ~ 500	4,418	$1,576 \sim 2,593$	4,418
501 이상	6,774	$2,594 \sim 5,556$	6,774
		$5,557 \sim 10,986$	12,369
		$10,987 \sim 16,125$	16,427
		16,126 ~ 34,376	28,011
		34,377 ~ 61,842	45,059
		61,843 ~ 99,763	61,028
		99,764 ~ 212,640	86,682
		212,641 ~ 382,752	116,918
		382,753 이상	140,994

###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 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햇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u>구경별 업종별</u> 부담금액은 별 표와 같다.

② ~ ④ (생 략)

[별표]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u>내경 15mm</u>	864,000원	1,312,000원
<u> 내경 20mm</u>	<u>2,180,000원</u>	<u>2,247,000원</u>
<u> 내경 25mm</u>	<u>3,688,000원</u>	<u>4,388,000원</u>
<u>내경 30mm</u>	<u>5,120,000원</u>	<u>8,185,000원</u>
<u> 내경 40mm</u>	<u>6,749,000원</u>	<u>10,456,000원</u>
<u> 내경 50mm</u>	<u>14,611,000원</u>	<u>23,314,000원</u>
<u> 내경 65mm</u>	_	<u> 38,142,000원</u>
<u> 내경 80mm</u>	_	<u>48,698,000원</u>
<u> 내경 100mm</u>	-	<u>84,597,000원</u>
<u> 내경 125mm</u>	-	<u>167,814,000원</u>
<u> 내경 150mm</u>	-	<u>219,750,000원</u>
<u> 내경 200mm</u>	-	<u>462,767,000원</u>
<u> 내경 250mm</u>	-	<u>1,044,423,000원</u>
<u> 내경 300mm</u>		<u>1,350,830,000원</u>
<u> 내경 350mm</u>	_ 	<u>1,729,460,000원</u>
<u> 내경 400mm</u>	=	<u>2,340,437,000원</u>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 다.

## 개 정 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 업종별 확산연면적 구간의 --

\_\_\_\_\_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가	정용	비가정용	
<u>연면적</u> <u>(m²)</u>	원인지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지부담금 (천원)
<u>85</u> 아하	<u>864</u>	<u> 151</u> 아하	<u>1,312</u>
<u>86 ~ 150</u>	<u>2,180</u>	<u>152 ~ 431</u>	<u>2,247</u>
<u>151 ~</u>	<u>3,688</u>	$432 \sim 915$	<u>4,388</u>
<u>300</u>	<u>5,120</u>	<u>916 ~ 1,575</u>	<u>8,185</u>
<u>301 ~</u>	<u>6,749</u>	$1,576 \sim 2,593$	<u>10,456</u>
<u>400</u>	<u>14,611</u>	$2,594 \sim 5,556$	<u>23,314</u>
<u>401 ~</u>		$5,557 \sim 10,986$	<u>38,142</u>
<u>500</u>		$10,987 \sim 16,125$	<u>48,698</u>
<u>501 이상</u>		$16,126 \sim 34,376$	<u>84,597</u>
		$34,377 \sim 61,842$	<u>167,814</u>
		$61,843 \sim 99,763$	<u>219,750</u>
		<u>99,764 ~</u>	<u>462,767</u>
		<u>212,640</u>	<u>1,044,423</u>
		<u>212,641 ∼</u>	<u>1,350,830</u>
		<u>382,752</u>	
		<u>382,753 이상</u>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 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 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 결정한다.
- ※ <u>부</u>과시기는 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u>부</u>과하 되,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다.

#### 현 행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u>구</u> 분	<u>신설</u>	<u>개조</u>
내경 15mm	<u>327,000원</u>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
내경 20mm	<u>916,000원</u>	<u>금 차액 장수. 다만, 산</u>
내경 25mm	<u>1,473,000원</u>	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
<u> 내경 30mm</u>	<u>2,618,000원</u>	<u>주택(「건축법」제2조제2</u>
내경 40mm	<u>4,418,000원</u>	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
내경 50mm	<u>6,774,000원</u>	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
<u> 내경 65mm</u>	<u>12,369,000원</u>	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
내경 80mm	<u>16,427,000원</u>	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100mm	<u> 28,011,000원</u>	
<u> 내경 125mm</u>	<u>45,059,000원</u>	
내경 150mm	<u>61,028,000원</u>	
내경 200mm	<u>86,682,000원</u>	
<u> 내경 250mm</u>	<u>116,918,000원</u>	
<u> 내경 300mm</u>	<u>140,994,000원</u>	
<u> 내경 350mm</u>	<u>177,487,000원</u>	
<u> 내경 400mm</u>	<u>193,161,000원</u>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개정안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1. 신설

<u>가</u>	정용	<u>비가정용</u>		
<u>연면적</u> <u>(m²)</u>	원인자부담금 (천원)	<u>연면적</u> <u>(m²)</u>	원인자부담금 (천원)	
<u>85</u> 아하	<u>327</u>	<u> 151</u> 아하	<u>327</u>	
<u>86 ~ 150</u>	<u>916</u>	$152 \sim 431$	<u>916</u>	
<u>151 ~ 300</u>	<u>1,473</u>	<u>432 ~ 915</u>	<u>1,473</u>	
<u>301 ~ 400</u>	<u>2,618</u>	$916 \sim 1,575$	<u>2,618</u>	
<u>401 ~ 500</u>	<u>4,418</u>	$1,576 \sim 2,593$	<u>4,418</u>	
<u>501 이상</u>	<u>6,774</u>	$2,594 \sim 5,556$	<u>6,774</u>	
		$5,557 \sim 10,986$	<u>12,369</u>	
		$10,987 \sim 16,125$	16,427	
		<u>16,126 ~ 34,376</u>	<u>28,011</u>	
		$34,377 \sim 61,842$	<u>45,059</u>	
		<u>61,843 ~ 99,763</u>	<u>61,028</u>	
		$99,764 \sim 212,640$	<u>86,682</u>	
		<u>212,641</u> ~ 382,752	<u>116,918</u>	
		<u> 382,753 이상</u>	<u>140,994</u>	

#### 2. 개조

- 신·구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 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m^2$  초과할 경우에도  $85m^2$ 이하 구간으로 적용 한다.
- ※ <u>공원은 물사용량을 종합 고려하여 수요가와 협의 후</u> 결정한다.